
**「원전산업성장펀드」
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
FAQ**

2025. 5. 29.

신한자산운용

목 차

1. 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 1
2. 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 1
3. 개인의 LOC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 1
4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 2
5. 책임투자 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은? 2
6.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? 2
7.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? 3
8. 병행펀드 설정 시,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? 3
9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 3
10. 정부재원 활용 펀드(모태펀드)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? · 4
11. 출자제한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? 4
12. 민간출자자 정의는? 4
13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? 4
14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? 5
15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? 5
16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 5
17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 6
18. 타출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 6
19.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코자 투자 받을시
주목적 인정 가능한지? 6
20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 7
21. 주목적 투자비율 우대 대상 기업은 공고에 게시된 리스트상 기업

이면 모두 해당되는지?	7
22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	7
23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	7
24 펀드 존속기간은 반드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?	8
25 순수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의 차이는?	8
26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정의는?	8
27 최다출자자의 정의?	9
28 병행펀드 구조 고려시 제안서에 기재 여부?	9
29 병행펀드 결성일은 반드시 제안펀드보다 앞서야 하는지?	9
30 작성기준일 당시 재직하지 않았던 인력의 참여가능 여부?	9

Q1. 출자확약서(LOC)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

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

- 단, 접수일 이후 LOC를 발급 받는 경우 구술심사 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목적으로만 활용

Q2. 출자확약서(LOC)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

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되 각 출자기관 고유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

- 다만, 본건 출자사업 목적상 LOC 기재내용(기간, 투자대상, 투자 조건, 유효기간 등) 등이 적합한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
 - 특히, 출자확약서(LOC) 유효기간이 본건 출자사업 펀드 결성시까지 유효해야함

Q3. 개인의 출자확약서(LOC)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개인의 LOC는 운용사 소속인력에 한하여 인정

**Q4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 양식에 전 직장 대표이사
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?**

- 투자관련 경력의 경우, 공고된 서식에 따라서 경력증빙 제출 필요
 - 대표이사 날인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날인으로 갈음 가능(심사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확인 가능해야 함)

- 투자 외 경력의 경우,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*를 제출

* 참여운용인력 경력사항 제출시 재직일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

**Q5. 책임투자(ESG, 스투어드십코드) 관련한 평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
기재해야할 내용은?**

- 책임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운용사가 책임투자 도입현황 및 계획 등을 각 주관기관별 제출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 가능 (스튜어드십코드 참여현황 등도 포함)
 - 현재 책임투자 관련 내규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내규 및 제도 구축현황, 투자의사결정 체계 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 등을 기재
 - 도입추진중 또는 향후 도입 계획의 경우, 도입계획, 실현방안, 일정 등을 기재

Q6.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?

- 펀드의 최종 약정총액(증액하는 경우, 증액금액 반영)을 의미하며, 병행펀드가 있는 경우 병행펀드의 약정총액까지 합산함

Q7. 운용보수 중 관리보수 지급 방식은? ① 또는 ② 중 택일

☞ 최종 펀드 결성총액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

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

<관리보수율 적용 방식(예시)>

관리보수 지급 기준

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, 이후 투자잔액 기준

- (성립일~2년) 투자잔액 및 "약정총액 - 투자잔액" 기준
- (2년 ~ 만기) 투자잔액 기준

구 분	≤1,000억원	≤2,000억원
투자잔액	연1.8% 이내	연1.3% 이내
(약정총액 - 투자잔액)	연1.4% 이내	연0.9% 이내

* 단 결성금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성립일~2년 이내 시 투자잔액[2.0% 이내] 및 (약정총액 - 투자잔액) [1.6% 이내]를 적용, 2년~만기 시 투자잔액[2.0%] 적용

② 2년간 약정총액, 이후 투자잔액 기준

- (성립일~2년) 약정총액 기준
- (2년 ~ 만기) 투자잔액 기준

구 분	≤1,000억원	≤2,000억원
성립일 ~ 2년	연1.5% 이내	연1.0% 이내
2년 ~ 만기		

* 단 결성금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1.7% 이내 적용

Q8. 병행펀드 설정 시, 관리보수 구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?

병행펀드의 약정총액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함

Q9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

불가능함

- 아울러, 병행펀드는 본 건 제안 펀드와 동일한 프로세스(동일 투자대상, 동일 비율, 회수 등)로 운용해야 하며, 병행펀드를 포함하여 주목적 투자비율을 준수해야 함

Q10. 정부재원 활용 펀드(모태펀드) 등 출자사업에 공동출자 가능한지?

-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모태펀드(운용사 : 한국벤처투자)와 공동출자 불가함

Q11. 당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출자제한 1년을 받은 상황인데, 금번 지원과 관련하여 1년의 산정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?

- 주관기관의 제재사항(공고문 4.제재 사항 및 기타 항목)에 해당하는 운용사 판단기준일은 접수일(2025.6.5(목)) 기준

Q12. 민간출자자 정의는?

- 운용사,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, 해외출자자, 정책기관(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)을 제외한 출자자. 연기금·공제회와 같은 민간자금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는 민간출자자에 포함하며,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준임(알리오 홈페이지 www.alio.go.kr 참고)
-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기관(해당 기관에서 100% 출자한 펀드 포함)은 민간출자자에서 제외하며, 민간출자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협의 필요

Q13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 및 주기는?

- 대상 : 지분법 대상이 되는 원전산업성장펀드 자펀드 전체
- 주기 : 반기별 평가

Q14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?

- 최근년도 기준 감사보고서(또는 제안서 작성기준일의 가결산보고서) 장부가액으로 기재

* 최근년도 감사보고서(또는 가결산보고서)에 반영되지 않은 공정가치 금액은 미인정

Q15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의 가치 반영 방법은?

- 각 펀드 감사보고서 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치 반영

비시장기업 (가)기업을 2개의 펀드(A펀드, B펀드)에서 투자 후 A펀드는 원가법으로, B펀드는 공정가치 평가값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

- A펀드 : 취득원가 10억원, B펀드 : 공정가치 15억원

⇒ A펀드 10억원, B펀드 15억원으로 기재

Q16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

- 본 사업은 10년 이내의 장기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출자목적 이해도, 장기적인 출자능력 등을 보유한 자가 출자 가능함

- 국내 기관투자자, 법인이 원칙이며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*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은 주관기관 앞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능

* 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이 특정금전신탁 등의 방식으로 출자 불가

- 해외출자자는 아래 서류 구비 필요 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)

- 출자자의 사업자 등록증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출자자의 인감증명서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이사회 등 LOC 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
(단순 출자여부 뿐만 아니라, 주목적 투자를 비롯한 주요 펀드결성조건, 국내법에 근거한 펀드 출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- 대표이사 여권사본(기타 신원 증빙이 가능한 서류)
- 최근년도 연차보고서 등 출자자(회사)개요 자료, 최근 3개년 외부감사받은 감사보고서
- 기타 출자자 및 출자여부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상기 자료들은 국문으로 번역 및 공증 필요하며, 추가 확인자료 요청 가능

- 지방자치단체 출자시 LOC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 제출 필요

Q17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

- 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출 방식 펀드 운용은 허용하지 않음

Q18. 타출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

- 반도체생태계펀드(일반·재정) 및 '24년 혁신산업펀드(재공고)와 중복 지원 불가
- '25년 성장지원펀드 및 혁신산업펀드에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 운용사(타 본부 포함)에서 원전산업성장펀드에 지원 불가
- 제안펀드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출자사업에 참여할 경우, 개별 사전협의 필수

Q19.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닌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투자를 받을 경우 주목적투자로 인정받는지?

-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,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

Q20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

- 원전산업장펀드 조성 취지 및 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정책기관 등이 요청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 추가 가능하며, 출자 기관 앞 사전 협의 필수

Q21. 주목적 투자비율 우대 대상 기업은 공고에 게시된 리스트상 기업이면 모두 해당되는지?

- 선정공고에 게시된 “원전협회 지정 원전기업 리스트 대상 기업” 및 “산업부 구성 SMR 얼라이언스 대상 기업”에 해당하고(향후 업데이트 포함), 주목적 투자 대상 ①, ②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

Q22.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

- 공동 운용사 전체 기준으로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, 현장실사시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(엑셀양식 4.2)

Q23.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

- SPC 기준이 아닌, 투자기업 기준으로 작성하고, 기타사항 셀에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한 투자임을 기재 (엑셀양식 2.6, 3.2)
- 아울러, 하나의 SPC에 복수의 펀드 등이 출자하고,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한 경우, 전체 금액이 아닌 제안사 작성 대상 펀드 (운용인력) 기준으로 기재

Q24. 펀드 존속기간은 반드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

- 펀드 존속기간은 운용전략에 따라 10년 이내(10년, 9년 등)로 설정 가능함

Q25. 순수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의 차이는?

- 순수해외투자는 순수 비거주자 앞 투자를 지칭하며, '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'를 제외한 해외투자임

*** 국내 기업 관련 해외투자 예시**

- 가.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
- 나.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
- 다. 회사(펀드)가 국내기업(SI)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
- 라.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(단,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, 내국인이 경영권을 보유)
- 마. 전체 고용인력 대비 한국 내국인 고용률이 50% 이상인 외국기업
- 바.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, 기술 관련 공동 연구·개발과 관련하여,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

Q26.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정의는?
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규모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중소기업
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, 상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

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함

Q27. 최다출자자의 정의?

- 정책출자자(재정 및 한국산업은행 출자액) + 지정출자자(한국수력원자력 출자액)의 출자금 총액을 초과한 출자자 중 제안펀드와 병행펀드 합산하여 최다출자자 1곳

Q28. 병행펀드 구조 고려시 제안서에 기재 여부?

- 병행펀드 구조 고려하는 운용사의 경우, 제안서에 운용 사유, 주요 세부 운용 조건, 결성 예정일 등을 명시 필요
(워드 제안서 內 ‘VI. 기타의 4.기타사항’ 에 기재)
- 투자 및 분배 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로 인한 세금 등 이슈가 없는지도 검토 필요

Q29. 병행펀드 결성일은 반드시 제안펀드보다 앞서야 하는지?

- 병행펀드 결성일은 제안펀드 결성일보다 늦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제안펀드 결성일보다 늦을 수 있음
다만, 이 경우에도 병행펀드는 ‘25년말 이전까지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며, 정책출자자가 참여한 제안펀드의 주요 운용 조건에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을 초래할 경우, 병행펀드 결성은 불가함

Q30. 제안서 작성기준일에 재직하지 않았던 인력도 참여인력으로 지원 가능한지?

- 제안서 접수일(2025.6.5.) 현재 재직중이라면 지원 가능하며, 투자현황

및 경력기간 등은 제안서 작성기준일(2025.3.31.)로 작성해야 하고,
작성기준일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